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6.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6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6월 1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 103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2004. 6.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병찬)

- 가. 개정이유
 -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검사 의료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Access II)를 구입하여 암표지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또한 구강보건업무 분야에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 실시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간염검사비 등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별표] 수수료액표 5. 검사란 중 암표지자검사에 따른 수수료액을 신설함.
 - AFP : 1회당 6,000원
 - CEA : 1회당 6,000원
 - PSA : 1회당 6,000원
 - CA125 : 1회당 6,000원
 - [별표] 수수료액표 6. 구강보건과 진료비란 중 불소도포 진료비를 신설함
 -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단, 시술 상·하약 당 1회로 산정한다)
 - [별표] 수수료액표 5. 검사란중 간염검사 수수료를 개정함
 -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로 개정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암 발견을 위한 암표지자검사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 산출내역을 검토해 보면 재료비와 감가상각비만을 감안한 수가로써 시중의 검사진료비보다 월등히 낮아 이용 주민의 증대 및 국가 암검진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 또한, 불소도포진료를 새로이 신설하게 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치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검사 전용의료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실시하는 암표지자검사 및 비보험급여 대상진료나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불소도포 시술, 관계 법규 개정으로 법적 근거 소멸에 따른 간염검사 등의 의료수가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수수료액표 5.검사란 중 암표지자검사에 따른 수수료액을 신설함.
 - AFP : 1회당 6,000원
 - CEA : 1회당 6,000원
 - PSA : 1회당 6,000원
 - CA125 : 1회당 6,000원
- [별표] 수수료액표 6.구강보건과 진료비란 중 불소도포 진료비를 신설함.
 -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단, 시술 상·하약 당 1회로 산정한다)
- [별표] 수수료액표 5.검사란 중 간염검사 수수료를 개정함.
 -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관련공문 : 서울시의약65313-3821(2001.7.2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간염검사 수수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04년도에 예산편성 완료)
- 입법예고(2004. 4. 21. ~ 2004. 5.11.)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수수료액표 중 5.검사란의 “나. 수질검사”란 다음에 “다. 암표지자검사”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5. 검사	다. 암표지자검사			
	· AFP	1회	6,000원	
	· CEA	1회	6,000원	
	· PSA	1회	6,000원	
	· CA125	1회	6,000원	

제2조제2항 [별표] 수수료액표중 6. 구강보건과 진료비 란의 “가.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란 다음에 “나. 불소도포 진료비”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6. 구강보건과 진료비	나. 불소도포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제2조제2항 [별표] 수수료액표중 5. 검사란의 “가. 간염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5. 검사	가. 간염검사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 수 료 액 표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제 <1994.12.3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삭제 <1994.12.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항결핵제보급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항결핵제보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료접종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 유료접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검사	가. 간염 검사	1회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 검사	가. 간염 검사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나. 수질 검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수질 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다. 암표지자검사 · AFP 1회 6,000원 · CEA 1회 6,000원 · PSA 1회 6,000원 · CA125 1회 6,000원			
6. 구강보건과 진료비	가. 치면 열구전색진료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구강보건과 진료비	가. 치면 열구전색진료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나. 불소도포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하약당 1회 산정한다.
7. 건강증진센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7. 건강증진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골밀도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8. 골밀도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